

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02월 28일

국토교통부장관

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」

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현행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빈집에서 제외하고 있는 「건축법」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「주택법」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주택도 빈집에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계적으로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빈집에서 제외되는 주택에서 무허가 주택 삭제(안 제2조제3호)

빈집에서 제외되는 주택에서 “「건축법」상 사용승인 또는 「주택

법」상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주택” 삭제

3. 의견제출

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04월 0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) → 정책자료 → 법령정보 → 입법예고·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의견과 이유)

현행	개정안	의견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주소·전화번호
다. 보내실 곳 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

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

- 전화번호: 044)201-4524, 4942